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752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송기헌·백혜련·김남국

김용민 · 김종민 · 박범계

박주민·소병철·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이 법에서 「형사소송법」의 관련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"를 "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"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1항"을 "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제5항"을 "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2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<u>「형사소송</u>	제1조(목적) <u>「형사소송</u>
법」 제197조에 따라 사법경찰	법」 제245조의10
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	
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.
제3조(교도소장 등) ① 교도소ㆍ	제3조(교도소장 등) ①
소년교도소・구치소 또는 그 지	
소(支所)의 장은 해당 교도소・	
소년교도소・구치소 또는 그 지	
소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	
하여 <u>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</u>	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제
<u>제1항</u> 에 따른 사법경찰관(이하	<u>1</u> 하
"사법경찰관"이라 한다)의 직무	
를 수행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	4
우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	
교정시설 순회점검 업무에 종사	
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	
무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하	
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	
직무를, 8급·9급의 국가공무원	
은 그 범죄에 관하여 <u>「형사소</u>	<u></u> 「형사소
<u>송법」 제196조제5항</u> 에 따른 사	<u>송법」 제197조제2항</u>

법경찰리(이하 "사법경찰리"라	
한다)의 직무를 수행한다.	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